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4 선고 2018가단5039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변론 종결2019. 3. 14.

판결 선고2019. 4. 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 주식회사는 9,880,127원 및 그 중 6,886,841원에 대하여 1994. 3. 3.부터 1995. 10. 22.까지는 연 17%의, 그 다음날부터 1998. 1. 2.까지는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1998. 1. 14.까지는 연 21%의, 그 다음날부터 1998. 7. 14.까지는 연 27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나. 피고들은 연대하여 30,186,969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인정근거
 - 가. 피고 1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 - 나. 피고 2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지환

별지